

영동 렉시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12.09.(수)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 60%를 추정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영동군)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현재 당 주택건설지역(영동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영동군 거주자가 우선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책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신청자별, 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 선정 및 층·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층·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유의 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12.09.(수)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당첨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첨자의 층·호수 배정시에만 반영됨.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재당첨 제한)에 의거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도시건축과-54484호(2015.12.0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89번지 외 3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상1층~지상 10층 1개동 총 54세대 및 기타 시설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세대)

구분	아파트 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입주 예정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 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공급 면적					
민영 주택		84.5187 A	84.5187	31.1674	115.6861	5.8597	121.5458	84.5187/4572.8685	9	2015년 12월31일 이후
		84.9722 B	84.9722	30.5686	115.5408	5.8911	121.4319	84.9722/4572.8685	9	
		84.6524 C	84.6524	31.2061	115.8585	5.8690	121.7275	84.6524/4572.8685	18	
		84.6504 D	84.6504	30.6621	115.3125	5.8688	121.1813	84.6504/4572.8685	18	
소 계		4572.8685	4572.8685	1669.2490	6242.1175	317.0355	6559.153	3667.0000	5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VAT포함)

타입 (유형)	총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총 분양금액		1회(10%)	(계약금-중도금)
							계약시	16년01월24일	입주시
84.5187 A	2,3,4층	3	9	18,485,000	186,515,000	205,000,000	20,500,000	20,500,000	164,000,000
	5,6,7,8,9,10층	6		18,485,000	191,515,000	210,000,000	21,000,000	21,000,000	168,000,000
84.9722 B	2,3,4층	3	9	18,474,000	180,526,000	199,000,000	19,900,000	19,900,000	159,200,000
	5,6,7,8,9,10층	6		18,474,000	185,526,000	204,000,000	20,400,000	20,400,000	163,200,000
84.6524 C	2,3,4층	6	18	18,524,000	186,476,000	205,000,000	20,500,000	20,500,000	164,000,000
	5,6,7,8,9,10층	12		18,524,000	191,645,000	210,000,000	21,000,000	21,000,000	168,000,000
84.6504 D	2,3,4층	6	18	18,440,000	180,645,000	199,000,000	19,900,000	19,900,000	159,200,000
	5,6,7,8,9,10층	12		18,440,000	185,645,000	204,000,000	20,400,000	20,400,000	163,200,000

※공통사항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총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 APT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단, 청약신청자중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영동군 거주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상기 주택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 제2항 관련)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 영 주 택	영동군 / 충청북도	1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제 적용(가정제 40%, 추첨제 60%)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청약가능 한 예치금액 이상인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부칙 (제227호, 2015.9.1.)에 따라 개정규정시행 전에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 <p>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p> <p>※ 별도 가정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정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정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p>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 신청 접수방법

1. 일반공급

(1) 공통

- 총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충청북도 지역 거주자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 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1순위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에 따라 접수.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3)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 청약신청 시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 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 (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 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p> <p>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p>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청약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 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 청약신청금 (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금 액	신청금 납부 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 (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시(09:00~16:00) : 가능한 영동군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의 영업일(2015.12.22) 이후부터 평일(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 분	환 불 장 소	비 고
인터넷 신청 시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은행창구 접수 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청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 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 시와 동일), 위임장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비고
일반공급	1순위	• 2015.12.16.(수) 08:00~17:30	• 인터넷 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2순위	• 2015.12.17.(목) 08:00~17:30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www.apt2you.com)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www.kbstar.com)	

-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주택청약 참가은행(16개)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청약 신청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 일정안내

구분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	당첨자발표	계약일정
일시	2015.12.16(수)	2015.12.17(목)	2015.12.22(화) 인터넷, 전화, ARS로 당첨사실 확인, 휴대폰 문자서비스, 견본주택 개시	2015.12.28(월)~2015.12.30(수) 견본주택에서 계약 체결

※ 상기 회차별 청약일정을 확인 하시어, 청약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층·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층·호수는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함.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 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층·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층·호수를 배정함. (층·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확인 후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 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세대 및 계약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층·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당첨자 발표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견본주택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인터넷청약 → 당첨사실조회
전화 /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전자금융 공동망(1369) [서비스코드:5#]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1)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 : 2015.12.28(월) ~ 2015.12.30(수) (3일간, 시간 : 10:00 ~ 16:00)
- 계약장소 : 당사 견본주택 (본 공고문 하단의 견본주택 주소 및 전화번호 참조)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일정기간(7일)내에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2)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은 반드시 아래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총·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타인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당사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된 은행에서 계약금을 본인이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소명을 못할시 중도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타인명의로의 입금으로 인한 기타 제반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대구은행	504-10-230669-2	(주)충북건설(진용호)	

- 분양대금 납부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시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아파트공급계약이 취소됨. 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 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 조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의 계좌는 부활되지 않음(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재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건축시 주택에 진,출입을 위해 국공유지 등의 도로를 점용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자가 소유권을 이전 받은 날로부터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함을 유의바람.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당사에서 임의 분양함.
- 사전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층·호수는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임.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기타 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를 통보할 의무가 없음)
-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미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가 중도금대출 자필서명시(사업주체가 정한 금융기관과의 기간 내)에 한하여 사업주체는 대출이자를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대납하며, 입주지정 최초일로부터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가 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이 불가하여 타금융기관 대출희망 및 용자실행시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인시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금융기관, 시행사와의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예정일 : 2015년 12월 31일 이후 입주가능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주민운동시설

▣ 하자보수는 주택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59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따라 적용됨

별도계약품목

▣ 발코니 확장

주택형(㎡)	공급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16.01.24	입주일	
84.5187 A	8,000,000	1,000,000	3,000,000	4,000,000	
84.9722 B	8,000,000	1,000,000	3,000,000	4,000,000	
84.6524 C	8,000,000	1,000,000	3,000,000	4,000,000	
84.6504 D	8,000,000	1,000,000	3,000,000	4,000,000	

- 발코니확장 옵션 선택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천정 형 에어컨) 시공됨.

▣ 단지 내·외 여건 및 설계관련 유의사항

- * 이하 명시한 단지 내.외부, 각 세대, 설계 등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수분양자가 감수하여야 함.
- 견본주택 건립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 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

- 본 아파트의 명칭, 단지내 명칭,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심의결과, 상위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결정/변경될 수 있으며,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변경시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지는 부대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건폐율, 용적율,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공급면적과 대지면적 등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및 측량, 각종 평가심의 결과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경미한 차이 및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해야 하며, 본 아파트의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는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하며, 타 아파트 단지나 아파트 시공 현장들과 비교하여 이로 인한 이의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 현관,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하며, 공극과 스크래치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전기시설 등에 의하여 배치/설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그로인한 시공시 기본시설물의 변경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함.
- 어린이 놀이터 및 주차장 진출입구,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설비 등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세대내 보일러 가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가구 설치부위 등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이 없으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경관조명의 설치/사용할 경우 공용전기료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람이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상부에 배관이 노출 및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수기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평형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계약 전에 배치도를 확인하여야 함.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층·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단지내 조경계획에 따라 일부 동은 입주시 고가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보행자 또는 비상차량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향후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시설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에 시야 차폐 및 소음 등에 의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부대시설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샤시는 층수 및 향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유리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음.
- 발코니샤시는 바람 등에 의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난간은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바닥재 기준 1.2m 높이로 설치됨.
- 피난 대피소는 개구부의 크기가 관련 법적 조건으로 설치 되어 있으며, 향후 입주 후 샤시를 개별 설치할 경우에는 법적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해야 함.
- 피난 대피소의 출입문은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철재 방화문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주후에도 개별적으로 이를 제거하여 일반 목재 또는 플라스틱 문으로 설치할 수 없음.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의 벽체의 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마감두께로 인하여 안목길이는 줄어듦.
- 각 세대의 대피공간에는 겨울철 동파를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 설비는 시공되지 않음.
- 세대에 발코니 확장여부에 따라 스프링클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창호는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및 재질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일러실 연도배관으로 보일러실 창호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가구, 마감 및 단열재 설치에 따른 벽체의 두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조경배치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조감도에 표현된 조경수목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경 포장에 있어서 인허가 대비 품질의 변화는 없으나, 조감도 대비 패턴의 변화는 있을 수 있음.
- 단지 외곽 경관녹지 등 조경 수목은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조감도는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 카탈로그에 표현된 평면의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안목 치수가 아님
- 조감도에 표현된 외벽의 리브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음.
- 조감도에 표현된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카탈로그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의 단지 내외부 도로의 차선과 보행로 등은 관련법령 등의 준수를 위하여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감도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 색채는 임의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색채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시설물의 용도와 내부 시설물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 및 설치될 예정임.
-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는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전열교환기 및 장비노출로 인한 미관저해로 자연환기시스템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내 주방부분에 가스매립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SIZE 500*500)가 설치될 수 있음.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세대내 일부 경미한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현관,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훼손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됨.
-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PF대출금 상환 포함)에 사용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6항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시) 규정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고기밀 창호		적용	고시기준 제8조	▪ KS F2292에 따라 창호 기밀성능 2등급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고시기준 제13조	▪ 거실/침실/주방: 대기전력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고효율 기자재	가정용 보일러	적용	고시기준 제9조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시기준 제14조	▪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 :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 : 해당없음
	전동기	적용	고시기준 제9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고시기준 제15조	▪ 세대/공용부위: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
	난방/급탕 /급수펌프	적용	고시기준 제9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KS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고시기준 제15조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고시기준 제16조	▪ 세대 각 실: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고시기준 제17조	▪ 세대 내 수전류: 절수형 설비로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 소방, 통신감리
회사명	주식회사 미가존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경도기술단,
감리금액	126,821,310원	

■ 사업주체 : 주식회사 충북종합건설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로 157-1(매호동,에이동2층) / 사업자등록번호 : 502-86-19993 / 주택건설면허 : 대구-주택2013-0033)

■ 시공자 : 주식회사 초아종합건설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74-2 전진빌딩 3층(대명동) / 사업자등록번호 : 514-81-82868/ 건설업 등록번호 : 제03-0498호)

■ 견본주택 위치 및 안내전화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89번지 / 문의전화 : 043)744-0204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무실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